

입찰 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우리에프아이에스 주식회사(이하 “당사” 이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 제조 및 공사, 기타 계약(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예정가격'이란 물품, 공사,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예정가격조서의 형식으로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 ② '내정가격'이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을 말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공문 등)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 할 수 있으며, 자격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1. 입찰참가신청서(당사 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서 요구하는 서류

② 당사가 제1항의 서류에 대해 확인을 한 결과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당사는 그 사실을 해당 서류의 제출자에게 통지하며 입찰참가자는 서류 보안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사항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해당 계약의 특수조건,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당사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입찰보증금을 납

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관공서·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
2. 우리은행 또는 우리은행 자회사에서 50%이상 출자한 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와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계, 산림조합 및 중앙회
4.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당사 요청시 제출)

②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에 총입찰 예정량을 곱한 금액, 5년TCO 입찰의 경우 유상유지보수 금액을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총공사, 총제조 등에 대한 입찰액의 100분의 3 이상의 금액으로 할수 있다.

③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자기 앞 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입찰일로 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1.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규정된 상장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보증기금,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또는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조합,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기술인단체 또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본재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에금증서

④ 제5조 1항의 입찰보증금의 면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6조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입찰보증금의 귀속 및 반환)

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된다. 다만, 제5조 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은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② 입찰보증금(현금)은 납부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입찰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반환하도록 한다.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신고한 인감으로 대리인을 지

정한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에 대한 확인은 재직증명서(위임장)등에 의한다.

④ 입찰유의서 제8조에 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에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해당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설계 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4. 고의로 무효입찰을 한 자
5.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1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6.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7.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8. 입찰 참가 자격에 관한 서류, 그 밖에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9.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당사의 계약 및 구매 관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사적금전대차(알선 포함)를 한 자
10.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전기통신공사업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 규정에 위반(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당사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당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11. 공사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부실시공 또는 부실 설계를 한 자
12. 계약이행 과정에서 환경, 인권, 회계 등에서 비윤리적인 영업행위를 한 자
13.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당사에 손해를 끼친 자

②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대하여 해당 입찰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현장입찰

1. 입찰서는 당사 소정양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5년TCO 입찰의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날인하여야 한다.
3.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4.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5.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 할 수 있다. 단, 당사가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6.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7. 입찰금액은 당사가 지정하는 장소 인도가격으로 하고 관련비용(이윤, 부가가치세, 포장비, 배송비등 일체의 금액을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② 전자입찰

1. 전자구매관리시스템 : <https://fepm.woorifis.com>
2. 입찰서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5년TCO 입찰의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3. 입찰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위임장 대상자가 참여를 해야 한다. 위임장의 대상이 아닌자의 입찰 참가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여사에 있다.
4.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단, 당사가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입찰금액은 당사가 지정하는 장소 인도가격으로 하고 관련비용(이윤, 부가가치세, 포장비, 배송비등 일체의 금액을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등)

- ① 입찰서는 1인 1통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자입찰의 경우 당사 전자구매관리시스템 내 입찰금액 등록으로 입찰서 제출을 갈음한다.
- ②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서 허용한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당사가 지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당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③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없다. 단,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

종료시간 전까지 제출한 입찰금액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로서 성립한다. 단, 부동산 매각의 경우 예정가 이상 1인 응찰도 유효하다.

제12조 (입찰의 무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정해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의 도착일시까지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현장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6.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또는 당사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7.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위 변조로 판명된 입찰
8. 입찰 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② 당사 입찰담당자는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드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 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기로 한다.

② 입찰참여자가 2회 이상 동일금액을 입찰하거나 또는 제12조 1항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입찰을 무효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제13조 (입찰의 취소)

① 현장입찰

당사는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당사 입찰담당자가 인정하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을 경우 전자구매관리시스템에 입찰서 제출 후 입찰시간 종료 전까지 입찰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입찰취소 후 해당 횟수에서는 입찰 참여가 불가능하며, 다음 횟수부터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이 경우 당사가 요청하면 해당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제14조(입찰의 연기 등)

당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 및 입찰을 연기할 수 있다.

제15조(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 ① 당사는 경쟁입찰을 할때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 ① 유효한 입찰자중 당사에서 정하는 내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②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5년 TCO 입찰인 경우 입찰서의 총 입찰금액(물품금액 + 무상기간 포함한 5년간 유지보수금액)을 비교하여 최저가격 입찰업체를 선정하고, 그 물품금액이 당사 내정가격 이하인 경우 낙찰업체로 결정하며 그 외는 유찰이 된다. 물품금액은 추후 계약 시 계약금액이 된다
- ③ 5년 TCO 입찰인 경우, 투찰 유지보수 금액은 기 제출 견적서의 무상기간을 감안하여 입찰서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금액은 유상유지보수기간 동안 동일하게 균등 적용토록 한다. (6년차 이후도 동일금액으로 적용하며, 유지보수 금액을 0원으로 투찰할 경우 6년차 이후 유지보수 금액은 0원으로 한다)
- ④ 제2항에 의해 낙찰 적격자가 2개사 이상(5년 TCO 합계가 동일)일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단, 전자입찰의 경우 재입찰을 실시한다
- ⑤ 제2항의 낙찰이 결정된 입찰서에 기재된 총 입찰금액이 계산상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첫째, 총 입찰금액이 물품금액과 유지보수금액을 더한 금액보다 크거나 같으면 입찰서에 기재된 물품금액과 유지보수금액이 둘째, 총 입찰금액이 물품금액과 유지보수금액을 더한 금액보다 작으면 총 입찰금액에서 유지보수금액을 차감하여 물품금액으로 수정하고 그 물품금액과 유지보수금액이 계약대상 금액이 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정해진 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의 사유로 인하여 데약의 지연상황이 발생할시에는 그러하지 않을수 있다.
- ② 낙찰자는 입찰유의서 제5조 제1항에 의해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기재하고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③ 5년 TCO 입찰인 경우 물품계약은 최종낙찰자와 즉시 체결하고, 유지보수 계약은 물품 최종검수 후 낙찰자 또는 제조사 및 관계회사와 별도 계약을 체결한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당사와 계약 상대방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 함으로써 확정된다.
전자 계약서의 경우 전자서명(공인인증서)를 통해 기명날인한다.

제19조(비밀유지의무)

- ① 입찰자는 당사의 자체 작성한 중요정보 및 기밀 취득시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유지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입찰자는 당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기타사항)

입찰공고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의 계약사무지침 등 및 계약담당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계약 조건

우리에프아이에스 주식회사(이하 “당사” 이라 한다)와 물품공급(유지보수, 공사 등)계약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단, 구매대행인 경우 해당 고객사와 계약 체결한다.

1. 납품 기일 : 물품(유지보수, 공사 등)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당사가 지정하는 수량을 당사가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설치하여 정상가동 되어야 한다.
2. 납품기간 동안 일정 부분의 계약수량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량 증가의 경우 본 계약과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3. 낙찰금액(부가세별도 기준)이 단수(소수점이하) 발생시 그 금액에서 1,000 원 미만 절사하여 계약금액을 계산 확정한다.
4. 물품은 제안서(견적서 등)에 명시된 내역과 일치되는 신상품이어야 하며, 물품도입 후 규격상이, 품질불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동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물품 공급사의 비용 부담으로 교환, 보충하여야 한다.
5. 계약 체결전 상호 합의하에 시스템 구성 등의 변경은 가능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있어서는 안된다.
6.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계약기간 내에 추가 납품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추가 납품하여야 한다.
 - ① 추가 납품 수량의 한도는 직전 낙찰수량의 1배 범위 내로 한다. 단, 낙찰자가 1배 범위 내를 초과하여 납품에 동의하는 경우 그 범위까지로 한다.
 - ② 추가 도입 물량가격은 직전 낙찰가격 또는 그 낙찰가격 이내로 납품하여야 한다.
7. 계약 체결 후 물품(유지보수, 공사 등)의 공급자가 당사가 유지보수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대한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된다.
8.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을 현금 또는 당사 계약사무지침에 의한 보증서(보증보험증권 등)등으로 당사에 납부 하여야 한다. 단, 공사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없는 자가 낙찰된 경우에는 20/100 이상으로 한다.
9. 위 8 항의 보증기간은 계약기간의 개시일 이전부터 납입기간 만료일 30 일 이후까지로 한다.
10. 납품과 관련한 위 1 항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당사 계약사무지침에서 정하는 지체상금률(1,000 분의 1.5 이상 1,000 분의 10 이하)에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1. 대가의 지급은 당사 계약사무지침에 의거 검수 완료후 계약 당사로부터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 익영업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현금지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위 11 항 대가지급 청구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대가지급 청구금액(부가세포함)의 5%를 납부 하여야 한다. 단, 당사 내정가격의 100 분의 85 미만으로 낙찰된 자와 공사계약을 체결

하고자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대가지급 청구금액(부가세포함)의 10%를 납부 하여야 한다.

13.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인정하는 경우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4.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체결 당사자는 입찰 참가 시, 계약 체결 시 및 계약 체결 이후 등에도 파산, 화의, 회사정리 절차 및 그와 유사한 절차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부도,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체결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기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5. 당사에 제공한 제품 등에 대하여 제 3자로부터 특허, 저작권 또는 지적재산권의 침해청구가 있을 때, 제품 등 제공자는 자기 책임으로 당사를 방어하고, 그러한 침해 청구에 대한 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총비용(변호사비용 포함) 및 손해배상금을 부담한다.

16. 물품 공급사는 당사의 요청에 의해 운송 설치가동 완료 후 제 포장지류를 회수 조치하여야 한다.

17. 계약에 관한 서식은 당사 표준서식을 사용 한다. 단, 당사가 인정하는 경우 상호 합의하에 별도 서식을 사용 할 수 있다.

18. 당사(당사의 고객사 포함)의 민영화, 합병 및 분사 등 경영상의 사유 및 당사 관련 고객사의 서비스 중단 요구로 당사가 본 계약을 지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19. 위 18 항과 관련하여, 설치, 검수(공동검수 포함) 완료된 물품에 대해서만 대금청구 하고,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